

[신청자 유형별 서류 상세보기]

① (돌봄 필요성 증빙) '진단서·소견서 등' 또는 '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' 등

(1) (진단서·소견서 등) 신체적·정신적 질병,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

-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

* (참고) 신청자가 중증질환(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, 참고3), 희귀난치성 질환(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, 참고4), 노인성질환(참고5)자인 경우
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적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

-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,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

(2) (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)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, 사회·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(서식2)

* '일상돌봄 서비스 공공·민간 연계 동의서' 함께 제출 필요(서식 2-1)

- (고립)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,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,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

- (기타)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공공·민간 전달체계에 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자

◆ 공공·민간기관 범위

- 희망복지지원단, 찾아가는 보건복지팀, 의료급여관리사, 사회복지관, 중장년내일센터, 청년센터, 정신건강복지센터, 학교, 병원(의료사회복지사), 사회서비스원, 동주민센터, 가족센터, 주거복지센터, 드림스타트센터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위(wee)프로젝트 기관, **자립지원 전담기관, (가칭)청년미래센터(24. 설치 예정)** 등

※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·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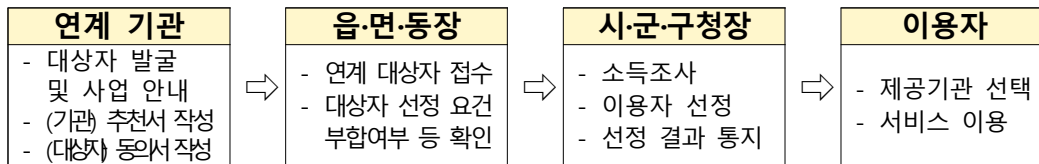
(3)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* (서식 2-2, 2-3, 2-4 참조)

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* '20.10월 이전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보호종료된 시설에서 시설장 명의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

◆ **공공·민간전달체계 연계**

- (연계내용)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따라 기본 및 특화서비스 연계
- (연계기관) (공공)통합사례관리사, 의료급여사, 행정복지센터, 맞춤형 복지팀 등 (민간)사회복지관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병원 및 의료사회복지사 등
 - 특히 책임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'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' 사업과 연계체계 구축 권장 (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함을 안내)
- (연계절차)



② (돌봄자 부재 증빙) 아래 중 어느 하나 증빙 시 가능

- 주민등록상 1인 가구(행복이음을 통해 확인 가능)
- 2인가구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, 학업(재학증명서), 취업준비(학원수강증),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

*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(통장사본), 현금수령증, 영수증, 급여명세서,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

③ (가족돌봄청년 증빙) 아래 중 어느 하나 증빙 시 가능

-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(실질적 동거 포함)
-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
-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서류(27p <표>참조)

* 재직증명서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(통장사본), 현금수령증, 영수증, 급여명세서, 문자메시지 기록 등 지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빙 가능

◆ (참고) 12세 이하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- 12세 이하 아동은 원칙적으로는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, 일상돌봄 서비스 외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
- 발견 시 시군구 '아동보호팀' 등 아동보호체계로 연계 필요
- 다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경우에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(돌봄필요성 요건 등 동일하게 적용)

< '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(경제활동 포함)'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>

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			증빙서류		
대분류	중분류	세부			
경제 활동	임금 근로자	주 15시간 이상 근무	4대보험가입자		직장건강보험, 고용보험 가입자 *(육아)휴직자 제외
			4대 보험 미 가입자	재직 관련	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고용(근로)확인서, 위촉(탁)계약서, 국민연금가입자(사업장가입자)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
	소득 관련	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중 1부			
	자영업자		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- 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 신고서 (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) -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		
	(특수형태 근로종사자)	판매원 가입 확인서,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			
	농어업인	농업(어업)인 확인서, 농업(어업)경영체등록증명서,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			
장애인		장애인 등록증(중증장애인에 한함)			
일상생활 수행 어려움		장기요양인정서, 건강보험 산정특례(중증질환, 희귀질환) 등록 신청서 등			
장기 부재	교도소 수감		재소증명원		
	입원		의사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중 택1(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) * 치료·요양기간 명시 필요		

- *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,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- ※ 건강보험·고용보험 가입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